

【별표 5】

기술능력, 장비 등의 세부 기준(제16조 관련)

기술능력	시설 및 장비
1)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·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중 1명, 대기환경산업기사·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, 분석요원 1명 2)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실내공기질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 3)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	1) 실험실 2)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) 미세먼지(PM10) 나) 이산화탄소(CO₂) 다) 포름알데히드(HCHO) 라) 총부유세균 마) 일산화탄소(CO) 바) 이산화질소(NO₂) 사) 라돈(Rn) 아) 휘발성유기화합물(VOC) 자) 석면 차) 초미세먼지(PM-2.5) 카) 곰팡이 타) 오존(O₃)(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3)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(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는 포함한다)